

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

1. 개정이유

- 파생상품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시장 개설 등을 통하여 전문투자자 중심의 위험관리시장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 운영의 자율성 확대 (§9의2 등 63개 조)

- 법에서 나열한 사항*을 제외하고 시장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위임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거래활성화를 촉진
- * 장내파생상품의 유형 및 품목, 결제월, 증거금, 결제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그 내용의 변경·폐지 등에 관하여 승인하도록 한 사항(법 제393조 및 제412조)

- 기타 시장운영과 관련된 세부제도*의 변경·개선에 대해서는 거래소内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

* 품목별 세부 기초종목, 결제월의 수·거래기간, 호가가격단위, 최종거래일, 권리 행사가격수 등

- 협의대량거래의 대상 및 시장조성자 제도 중 일부*를 세칙으로 위임하여 시장운영의 자율성을 확대

* 시장조성자의 자격, 시장조성호가 제출방법, 평가기준 등

※ 금융위 의결사항과 거래소내 위원회 심의사항 구분

구분	금융위 의결				거래소내 위원회 심의				
	품목	결제월	최종결제방법	거래승수	기초종목	결제월 수(거래기간)	호가가격단위	최종거래일	권리행사가격수
주식상품	KOSPI200 선물	분기월	현금결제	50만	-	3월·9월 1개(1년) 6월 2개(2년) 12월 3개(3년)	0.05p	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	-
	KOSPI200 옵션	매월			-	기타월 4개(6개월) 3월·9월 1개(1년) 6월 2개(2년) 12월 3개(3년)	0.05p 또는 0.01p		기타월 25개 3월·9월 13개 6월·12월 7개
	주식선물	분기월	현금결제	10	60개주식	3월·9월 1개(1년) 6월 2개(2년) 12월 3개(3년)	10원~1,000원	10원~200원	-
	주식옵션	매월			10개주식	기타월 2개(3개월) 3월·9월 1개(1년) 6월 2개(2년) 12월 3개(3년)	9개		
금리상품	3년국채선물	분기월	현금결제	100만	-	분기월 2개(6개월)	0.01p	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	-
	5년국채선물				-				
	10년국채선물				-				
통화상품	미국달러선물	매월	실물인수도	1만	-	분기월 4개(1년) 기타월 4개(6개월)	0.1원	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	-
	미국달러옵션				-	분기월 2개(6개월) 기타월 2개(3개월)			7개
	엔선물				-	분기월 4개(1년) 기타월 4개(6개월)			-
	유로선물				-	분기월 4개(1년) 기타월 4개(6개월)			-
일반상품	금선물	매월	실물인수도	1,000	-	짜수월 6개(1년) 홀수월 1개(2개월)	10원	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	-
	미니금선물	매월	현금결제	100		짜수월 6개(1년) 홀수월 1개(2개월)	10원		-
	돈육선물	매월	현금결제	1,000	-	분기월 2개(6개월) 기타월 4개(6개월)	5원	-	-

* 음영 처리된 부분은 세칙사항 중 제도개선(신설) 사항임

※ 제도 개선 관련 시행세칙 주요 내용

① 코스피200선물·옵션, 주식선물·옵션 장기결제월물 상장

- 기관투자자의 장기·해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대 3년*까지의 장기 결제월물 상장

* (현행) 코스피200·주식선물은 최대 1년, 코스피200·주식옵션은 최대 6개월

※ 장기결제월물 신규상장 예시

상품	2014												2015												2016												결제월 수
	9	10	11	12	1	2	3	4	5	6	7	8	9	10	11	12	1	2	3	4	5	6	7	8	9	10	11	12									
코스피200	●	●		●		●							◆				◆					◆						7개									
선물	1년		3년		1년		2년						3년				2년					3년															
코스피200	●	●	●	●	◆	◆	◆	◆		◆			◆			◆			◆		◆							11개									
옵션	1년	6월	6월	3년	6월	6월	1년		2년				3년				2년					3년															
주식	●		●		●		●						◆				◆					◆						7개									
선물	1년		3년		1년		2년						3년				2년					3년															
주식			●	●	●	●		◆		◆			◆			◆			◆									9개									
옵션		3년	3월	3월	1년		2년		1년		3년		2년				3년																				

* 코스피200선물·옵션, 주식선물은 '14.9.1 신규상장 기준, 주식옵션은 '14.11.17 신규상장 기준

* ● : 기준 상장 종목, ◆ : 신규상장종목, 기간은 거래기간을 의미

② 코스피200옵션 행사가격 간격 및 수 확대

- 코스피200옵션의 장기결제월물 상장에 따라 장기 변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행사가격 수 확대

잔존 거래기간	현 행			개선(안)		
	수	간격	범위	수	간격	범위
최근 연속 3개월	총 13개(상하 6개)	2.5P	15P	총 25개(상하 12개)	2.5P	
4개월 ~ 6개월	총 7개(상하 3개)	5P				
6개월 초과~ 1년이내	-			총 13개(상하 6개)	5P	30P
1년 초과	-			총 7개(상하 3개)	10P	

③ 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 확대

- 저유동성 종목의 호가제출을 유인하기 위하여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를 2배 확대(현물 주식과 일치)

주식선물 가격	호가가격단위		호가단위/가격(변경후)
	기준	변경 후	
1만원 미만	5원	10원	0.1% 이상
1만원 이상 ~ 5만원 미만	25원	50원	0.1%~0.5%
5만원 이상 ~ 10만원 미만	50원	100원	0.1%~0.2%
10만원 이상 ~ 50만원 미만	250원	500원	0.1%~0.5%
50만원 이상	500원	1,000원	0.2% 이하

④ 개별주식 선물·옵션의 상장 및 상장폐지 자율화

- 개별주식 선물·옵션의 기초자산 선정 세부기준(세칙)을 일부 보완하여 기관투자자 등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

- 정기변경(매년 6월)을 통하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자산은 상장시키고,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과기간** 이후 상장폐지

* 주식선물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35개 종목을 추가 상장(총 60개 종목)시키고, 주식옵션은 10개 종목으로 축소 후 점진적으로 확대

** 미결제약정이 없는 결제월종목은 즉시 상장폐지하고, 미결제약정이 있는 결제월 종목은 미결제약정 해소 후 상장폐지

- 정기변경 이외에 기초자산이 상장폐지되거나, 관리종목·정리매매종목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기초자산을 상장폐지하고 다른 기초자산으로 변경

※ 기초자산 선정기준

구분	유동성 기준	안정성 기준
규정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유통주식수 1천만주 이상 ▶ 소액출자자수 1만명 이상 ▶ 1년간 거래대금 5천억원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주식시장에 상장
세칙 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「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」에 따라 대용 증권에서 제외되는 주권은 기초주권에서 제외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직전 3사업연도 이내 사업보고서상 100분의 50 이상의 자본잠식이 없는 법인이 발행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직전 3사업연도 이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법인이 발행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직전 3사업연도 중에 회생절차, 채권은행의 공동관리·경영 관리가 개시되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직전월부터 소급한 36개월 이내의 기간에 단기과열종목*으로 지정된 횟수가 2회 이내인 법인이 발행(신설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「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」에 따라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권 종목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직전월부터 소급한 6개월간 일평균 종가가 액면가액의 150% 이상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현행) 액면가액(100%) 이상 → (개선) 액면가액의 150% 이상

* 음영 처리된 부분은 제도 개선(신설) 사항임

⑤ 협의대량거래 대상 상품 확대

- 거래가 부진하거나 협의대량거래 수요가 없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허용
- 시장참여자 편의를 위하여 협의대량거래 신청시간 확대
 - * (현행) 정규거래 개시 10분 후(09:10) ~ 종가단일가시간 개시 10분 전까지(14:55)
→ (변경 후) 정규거래 개시 5분 후(09:05) ~ 종가단일가시간 개시 전까지(15:05)

⑥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

- 시장조성자의 자격에서 투자매매업자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결제회원요건을 회원으로 확대
- 시장조성 대상상품은 최초상장상품 및 유동성관리상품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모든 상품·종목으로 확대

나.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시장 개설 (§3, §4, §5, §21의2, §21의3, §21의4, §21의5, §78 및 §154)

- 예상치 못한 변동성 증가·감소에 따른 시장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하여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시장을 개설
 - 기초자산은 코스피200 변동성지수* (V-KOSPI200)
 - * 향후 30일간 코스피200 지수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연율화한 값으로, 코스피200 옵션 가격으로부터 얹산
 - 거래승수는 50만, 결제월은 매월, 최종결제방법은 현금결제

* 기타 제도는 현행 코스피200선물과 대체로 유사

※ 코스피200선물 제도와 차이점

구 분	코스피200선물	변동성지수선물	규정
최종거래일 거래시간	9시 ~ 14시 50분	9시 ~ 15시 5분	§4
휴장일	-	옵션시장 휴장일	§5
미결제보유 한도수량	1만계약(코스피200옵션 포함)	1만계약	§154
결제월 수	7개 : 3월(1개) · 9월(1), 6월(2), 12월(3)	6개(연속월)	*세칙 사항
(최장)거래기간	1년(3월 · 9월), 2년(6월), 3년(12월)	6개월	

* 코스피200선물시장 CB 발동시 변동성지수선물시장도 중단

다. 섹터지수선물 시장 개설 (§3, §4, §10, §11, §12, §14 및 §154)

- 중위험·중수익 상품(섹터ETF·ELS 등)에 대한 전문투자자의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섹터지수선물 시장을 개설
 - 기초자산은 일정한 요건*을 충족하는 섹터지수**
 - * 선정요건 : ①거래소 또는 지수산출전문기관이 산출할 것, ②시가총액이 10조원 이상이고 구성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
 - **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권 종 거래소(또는 지수선물전문기관)가 산업군별(또는 유형별)로 구분한 구성종목에 대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
- 결제월은 분기월, 최종결제방법은 현금결제

* 거래승수는 섹터지수별 지수수준이 크게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위임

** 기타 제도는 현행 코스피200선물과 대체로 유사

※ 금융위 의결사항과 파생상품시장 위원회 심의사항 구분

구분	금융위 의결				거래소내 위원회 심의				
	품목	결제월	최종결제방법	거래승수	기초종목	결제월 수 (거래기간)	호가 가격단위	최종 거래일	
新 상품	변동성지수 선물	매월	현금 결제	50만	-	분기월 2개(6개월) 기타월 4개(6개월)	0.05p	결제월의 다음 달 코스피200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 30일 전의 날	
	섹터지수 선물	분기월	현금 결제	세칙 위임	선정 예정	3월·9월 1개(1년) 6월 2개(2년) 12월 3개(3년)	0.50p	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	

※ 변동성지수선물 및 섹터지수선물 신규 상장 예시

결제월	2014												2015												2016												결제월 수
	9	10	11	12	1	2	3	4	5	6	7	8	9	10	11	12	1	2	3	4	5	6	7	8	9	10	11	12									
변동성지수 선물		◆	◆	◆	◆	◆	◆	◆																								6개					
섹터지수 선물																	◆															7개					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3년			

* 14.11.17 신규상장 기준

* ◆ : 신규상장종목, 기간은 거래기간을 의미

라. 달러선물 야간시장 개설 (§4의2, §45, §46 및 §48)

- 국내 외환시장 종료 이후 야간 동안의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적절한 해지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달러선물 야간시장을 개설
- 거래시간은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
- 달러선물 야간시장의 거래제도는 정규시장과 동일하게 운영되되,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하여 일부 제도는 강화*

* 가격제한폭은 정규시장의 1/2로, 호가한도수량은 정규시장의 1/5로 제한(세칙사항)

마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정비 (§2 등 90개 조)
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본식한자어, 불명확한 표현,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

※ 조문 정비(예시)

변경 전	변경 후	변경 전	변경 후
정의	뜻	한하여	한정하여
규정이 정하는	규정에서 정하는	1만인 이상	1만명 이상
세칙이	세칙으로	당해	해당
~함에 있어서	~하는 경우, 할 때에	대하여	에(게)
~에 관해서는	~에 관하여는	소요되는	필요한, 드는
하여금	~에게, ~을	행하다	하다, 수행하다
○ ○ %	100분의 ○ ○	~에 있어(서)	~에서
(날)로부터	(날)부터	6월 단위 : 월	6개월 단위 ※ [기간] 개월, [날짜] 월
일방	어느 한쪽, 한쪽	타방	다른 쪽
그러하지 아니하다	① 문맥에 맞게 풀어 씀 ② 제외한다, 예외로 한다	하고자 하는 때에는	하려는 경우에는

3. 참고사항

- 심사등 : 전략기획부 심사완료(심사연번호 : 제14-140호)
시장감시본부 협의완료(감시제도-898)
-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